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03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10. 19.

주 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296,293,15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7,833,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가. 'B'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C은 2011. 12. 2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redacted] [redacted]구 D 토지 2,9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물 1,760.55㎡(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 등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2011. 12. 31. 기준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 전의 원고와 사이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기존건물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1. 5. 6. 착공, 2012. 3. 22. 준공)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 말의 개인사업자 재무제표에는 이를 3,239,146,162원으로 계상해 두었으나, 위 현물출자계약서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9. 총 자본금을 8,208,510,000원(액면가 10,000원인 주식 820,851주)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C은 이 사건 사업장과 현금 10,000원을 출자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가액을 8,208,509,862원으로 평가하고 C에게 원고의 주식 820,851주를 발행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2. 16. 이 사건 토지와 기존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5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라. 한편, C은 2012. 2. 22. 건설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3. 22.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2012.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에도 순자산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계산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원고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구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96,293,150원, 지방교육세 27,933,5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9. [redacted]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은 201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현물출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을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기존건물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원고의 자본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와 기존건물에 관하여 정당한 산출세액을 신고하였고 단시 감면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에 불과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므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1)]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인의 출자에 따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그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신설 법인으로서는 사업양수도 대가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그 순자산가액의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가 지급을 위해 유출될 수밖에 없어 신설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정이 없는 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검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취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이 사건 건물을 현물출자계약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11. 12. 31. 현물출자 당시 C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을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설립법인의 자본충실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바,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2. 9. 설립된 원고의 자본금이 위 현물출자 당시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현물출자 대상이었던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호 제5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장 전체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만을 고려하여야 하고(피고 주장처럼 건설 중인 자산이 유형자산으로서 순자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적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결국 계약의 해석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은 C과 원고가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가액평가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현물출자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C이 건설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완공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취득의 원인으로는 현물출자 이외에도 매매, 증여 등 다양한 것이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세 감면 이후에 이 사건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C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이 현물출자계약에서 제외되었다면 원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 등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2], 그에 상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현물출자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혜택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금지할 뚜렷한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2) 건설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건설 중인 자산은 사외로 유출될 여지가 없고 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양수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이나 증여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신설 2011.12.31>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